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26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2.19. 조 남 진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4.2.19.
- 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4.2.26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조 남 진 의원

가. 제안이유

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,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2)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안 제4조)

- 3)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4)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5)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19일 조남진 의원이 대표발의(발의자 9명)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0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3조 및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,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을 보면,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,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8조에서 센터의 의사결정,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, 그 운영기준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였음.

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,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음.

0 본 조례안의 제정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통해 만족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·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